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외국국채 등 매출시 정보게시 대상 개정)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(주문착오방지 관련 경고·보류기준 개정)
- 다.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(PF 사업성 평가 기반 대출시 책임준공 관행 개선)
- 라.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(금융투자약관 불공정성 심사 후 관할 법원 관련 사항 시정요청 반영)
- 마.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(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야간거래 도입 관련 사항 반영)
- 바. 증권 대차거래 약관 (약관 변경 동의절차 개선)
- 사.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(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 자산 확대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5/5/29 개정 · 2025/6/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☐ 투자자 정보제공 관련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라 동 규정에서 협회에 위임한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일부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☐ 외국국채 등 매출시 정보게시 등(제7~31조의3)
 - 대고객 RP 대상 외화 채권을 확대함에 따라,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동 채권을 담보로 RP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
 - (기존) 외국국채 → (개정) 국제기구채, 회사채 KP물(외화표시 한국기업채권)
 - 국제기구채권 및 회사채 KP물에 대한 시세 및 발행인 정보등을 해당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게시 대상으로 추가
 - 정보 게시 관련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 별지를 따르도록 함

3) 관련 규정

- 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(2025/5/30 개정 · 2025/6/2 시행)
 - 제55조의4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나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(2025/5/20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도입(거래소 2025년 6월 예정)과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 등을 반영하여 주문착오방지 관련 경고 · 보류기준을 개정하기 위함
 - 매매주문 시 착오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금액, 수량, 가격 등 특정 기준 초과시 팝업창을 통한 재확인(경고기준) 또는 책임자 승인(보류기준)을 거쳐 최종 주문 처리

2) 주요 내용

- 직전약정가격 정의 개정(별표 1)
 -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(당일 18시~익일 6시) 도입에 따라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전약정가격 정의 개정
 - 직전약정가격은 주문가격에 대한 보류·경고기준 적용시 기준값
 - 한국거래소 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」 제2조 제1항 제22호(당일 정규거래시간을 해당 거래일로 개정 등)
- 금선물에 대한 경고 · 보류기준 개선(제2-5조)
 - (기존) 주문가격 기준(50틱, 100틱)을 적용 중이나, 동 기준 적용 시 시장조성호가 제출에 어려움 발생
 - 저유동성 상품(2024년 7월~2025년 3월 중 36일(19.9%) 거래 미형성), 시장조성자 거래 비중 97.6%
 - 가격 변동폭 : 일평균 변동 1.3%(2025년 3월) > 보류기준 0.66%(100틱, 2025년 3월말, 149,000원기준)
 - 금현물 가격(g) : 46,950(2014년 3월 24일, 금선물시장 개장) → 149,000원(2025년 3월말), 317% 상승
 - (개정) 최소 호가수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금액 기준으로 경고기준(5억원 초과~10억원 이하), 보류기준(10억원 초과) 재설정
 - 시장조성계약 상 최소 10계약 이상(2025년 3월말 기준 1.49억원) 매도/매수 호가제출 필요
- 종류형집합투자지구 상장형 수익증권 시장 개설에 따른 보류 · 경고기준 신설(별표 1)
 -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준하여 매매거래제도 설정(거래소, 「종류형집합투자지구 상장형 수익증권시장 운영규정」), 2025년 7월 중 시장 개설 예정
 -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게 상장형 수익증권에 대하여 주문금액에 대한 보류 · 경고기준 설정
 - 개인 : 경고기준(15억원 초과 ~ 30억원 이하), 보류기준(30억원 초과)
 - 법인 : 경고기준(20억원 초과 ~ 60억원 이하), 보류기준(60억원 초과)

다.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(2025/5/29 제정 · 2025/5/30 시행)

1) 제정 이유

- PF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책임준공 관행 개선을 위함
 - PF 대출계약 시 현행 과도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장사유를 확대하고,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책임범위를 한정하는 등 합리적인 PF대출 취급관행 정착 유도
 - PF 대출계약은 표준도급계약과 달리 연장사유가 제한적이어서 시공사 귀책이 아님에도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
 - [표준도급계약(국토부 고시) 연장사유] : 불가항력 사유(천재지변, 내란, 전쟁, 전염병 등), 시공사 책임 없는 경우
 - [PF 대출계약 연장사유] : 불가항력 사유(천재지변, 내란, 전쟁 등으로 한정)
 - 책임준공일을 하루라도 경과한 경우 손해배상(대출원리금 채무인수 등)에 따른 미분양 위험 등을 시공사가 과도하게 부담

2) 주요 내용

- 연장사유 추가인정(제4조)
 - ① 유권해석이 있는 전염병·원자재 수급불균형·법령 제·개정 ② 기상청 확인이 가능한 태풍·홍수·폭염·한파 및 ③특별재난지역이 발령된 지진을 연장사유로 추가 인정
 - 범정부 회의 등을 통해 특정 상황이 국가계약법령상 공공 공사의 지체 상금 부과 제외 사유라는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, 민간 표준도급계약서상 유권해석 병행
 - 한편, 문화재·오염토 발견은 사전에 연장사유 인정 여부 및 연장기간 등을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 후 계약서에 반영
- 연장기간(제5조)
 - ①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유권해석에서 정하는 기간(혹은 기준기간 30일), ② 태풍·홍수·폭염·한파는 예상 공사 중단일수를 초과하는 기간, ③ 지진은 실제 지진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연장
 - 사유별 연장기간을 합산한 총 연장기간에 대한 상한(총 90일) 적용

[연장사유별 연장기간(세부사항)]

- ① (전쟁 · 사변 · 원자재 수급불균형·법령 제 · 개정 · 전염병) 유권해석에서 기간을 명시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되,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기간(30일)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실제 연장기간 결정(합의 불가 시 기준기간만큼 연장)
- ② (태풍 · 홍수 · 폭염 · 한파) 기상이변에 따른 예상 공사 중단일수(예 : 20일)를 계약서에 명시하고, 기상이변(기상청 기준에 따른 사유)으로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예상 공사 중단일수를 초과하는 기간
- ③ (지진) 지진으로 인해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
⇒ ①+②+③을 합산하여 90일 초과 불가

□ 채무인수비율(제6조)

- 책임준공일을 기준으로 경과일수에 따라 시공사의 채무인수비율을 선형적(경과일수 ×1/90일)으로 차등화
- PF 사업의 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다르게 적용
- (20% 미만) 경과일수×1/90일
- (20% 이상 40% 미만) 20% 미만인 경우보다 채무인수비율을 완화하되 세부 비율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PF대출 계약에 반영
 - 이 경우에도 채무인수 기간(90일) 만료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비율은 100%
- (40% 이상) 금융회사는 시공사의 채무인수를 면제
 - 시공사의 결정으로 시공사의 채무인수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는 적용 가능

[자기자본비율 산출방식(예)]

- 자기자본비율 = ① PF 투입자본 / ② 사업비
- ① (PF 투입자본) 원칙적으로 PF대출 계약시점에 PF사업을 위해 투입한 자금으로 결정
 - ② (사업비) 필수사업비([별첨]을 참고하여 산출)를 포함한 총 사업비로 결정

라.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(2025/5/13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약관 불공정성 심사 후 관할 법원 관련 사항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에 시정 요청을 함에 따라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14개의 약관을 개정하고 해당 내용이 미반영된 2개 약관에 관할 법원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

- (개정)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,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(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),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, 수익증권저축약관, 신용거래약관,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,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,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, 유사해외통화선물(FX Margin Trading)거래약관,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, 증권대차거래약관,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,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, 해외파생상품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
- (신설)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,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

2) 주요 내용

□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 사항 반영(제26조)

-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·무선·화상통신·컴퓨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의 재판관할은 고객의 주소(또는 거소) 기준으로 변경
 - 다만 고객의 주소(거소)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름

마.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(2025/5/13 개정 · 2025/6/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야간거래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고,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사항(관할법원)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야간거래 도입 관련 사항 반영

- 정규·야간거래시장의 정의 및 운영시간 등 신설(제1조 제2항)
- 기존 해외거래소 및 연계 야간거래 중지제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(제2조 제4항, 제6조 제1항, 제10조의3 제2항, 별첨 2)
- 야간거래시장의 위탁증거금 추가예탁, 과다호가부담금 관련 내용 추가(제11조 제1항, 제14조 제1항)

□ 공정거래위원회 관할법원 관련 시정요청 사항 반영(제41조)

-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·무선·화상통신·컴퓨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의 재판관할은 고객의 주소(또는 거소) 기준으로 변경
 - 다만 고객의 주소(거소)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름

바. 증권 대차거래 약관 (2025/5/13 개정 · 시행)**1) 개정 이유**

- ☐ 재판관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타 표준약관에 반영된 사항을 본 약관에도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 반영(제22조)
 -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· 무선 · 화상통신 · 컴퓨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의 재판관할은 고객의 주소(또는 거소) 기준으로 변경
 - 다만 고객의 주소(거소)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름
- ☐ 약관의 변경 절차 개선(제18조)
 - 기존 간략하게 규정된 약관 변경 동의절차를 타 표준약관과 동일한 게시 및 통지절차를 준수하도록 개정
- ☐ 일반 면책조항 개선(제19조)
 - 대여자(또는 차입자)의 손해발생 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

사.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(2025/5/13 개정 · 시행)**1) 개정 이유**

- ☐ 연금저축계좌 투자대상 자산 확대,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범위 변경 등 제도 개선사항을 약관에 반영하기 위함
 - 재판관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 사항도 반영

2) 주요 내용

- ☐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(제2조, 제4조, 제8조, 제12조, 제16조, 제18조, 제19조, 제23조, 제33조)
 -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상 ‘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’(인프라펀드)가 발행한 공모 집합투자증권 포함

- 「소득세법」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액 범위 확대사항 반영(제6조)
-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 사항 반영(제32조)
 -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·무선·화상통신·컴퓨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의 재판관할은 고객의 주소(또는 거소) 기준으로 변경
 - 다만 고객의 주소(거소)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름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